

---

**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(COVID)-19  
검역대응 지침(제15판)**

---

**2023. 9. 1.**

**중앙방역대책본부  
해외출입국관리팀**

본 대응 지침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국내 유입에 따라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지침」을 근거로 국립검역소 검역대응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 향후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및 발생 상황에 따라 보완·변경될 수 있습니다.

구분	주요 수정사항
개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감염병의심자 추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입국 전 신속항원검사(전문가용) 결과 양성인 사람</li> </ul> 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코로나19 검역관리지역 미지정 사항 반영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검역조사·조치 완화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기존) 유증상자, 의심환자 임시격리 의무</li> <li>→ (변경) 삭제</li> </ul> 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보고 의무 완화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기존) 환자 발생 메모보고, 유선 및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보고 시행</li> <li>→ (변경)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보고만 시행</li> </ul> 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운송수단(항공기, 선박) 소독 완화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기존) 의심환자 발생시, 소독명령(소독대행업체 의뢰 소독) 및 이동 금지</li> <li>→ (변경) 소독명령(운송수단 자체 소독)</li> </ul> </li> </ul>

# 목 차

I. 대응원칙	1
II. 사례정의	2
III. 공항 검역대응 절차	4
1. 공항 검역대응 주요사항 안내	4
2. 검역대응 흐름도	4
3. 입국검역	5
4. 유증상자 검역조사·조치	5
5. 무증상자 조치	8
IV. 항만 검역대응 절차	9
1. 항만 검역대응 주요 용어정의	9
2. 항만 검역대응 주요사항 안내	10
3. 검역대응 흐름도	10
4. 검역조사	11
5. 유증상자 검역조사·조치	12
6. 무증상자 조치	14
V. 진단검사	15
VI. 확진환자 발생 시 조치	17
VII. 기타 행정사항	18

## 서식 및 부록

### <<서식>>

1. 건강상태질문서 .....	19
2. <삭제> .....	20
3. <삭제> .....	21
4. <삭제> .....	22
4-1. <삭제> .....	23
5. <삭제> .....	24
6. <삭제> .....	25
7. 입항선박 검역조사 방법 결정을 위한 점검사항 .....	26
8. 검사의뢰 관리대장 .....	27
9. 검체 시험의뢰서 서식 .....	28
10. <삭제> .....	29
11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검사확인서 .....	30
12. <삭제> .....	32
13. 유증상자 통합조사·분류표 <신설> .....	33

### <<부록>>

1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인을 위한 실험실 검사 관리 .....	35
2. 코로나19 대응 상황별 개인보호구 권장 범위 .....	39
3. <삭제> .....	46
4. <삭제> .....	47

# I. 대응원칙

## 1. 법적 근거

-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이하 “코로나19”)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 따른 ‘제4급감염병’으로 대응함

\* (근거) 「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」(질병관리청고시 제2023-8호) 제2호가목

- 「검역법」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국내 유입·확산 방지를 위해 적용

## 2. 대응방향

- 이 지침은 코로나19에 대해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며,

-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지침」(지자체용)에 따른 ‘권고’ 및 ‘자율’ 기조에 기반하여 효율적인 검역 대응 수행

- 향후 발생 상황, 변이 발생 여부, 관련 연구결과 등에 따라 사례 정의와 대응절차 등 주요 내용이 변경 가능하며

- 공·항만의 코로나19 관련 검역의 경우 본 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하되, 검역현장 상황을 반영하여 세부 절차 등을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음

- 본 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검역업무지침 등 관련 지침을 준용함

## II. 사례정의 등

본 사례정의는 국내 유입된 코로나19의 위기경보 수준 ‘경계단계’ 상황에 적용하며, 「코로나바이러스19 대응 지침(지자체용)」 변경에 따라 사례정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

### 1. 사례정의

- ▶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 : 검체에서 코로나19 특이 유전자 검출 등
  - \* 근거: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사 4. 제4급감염병(4-24)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
  - 신속항원검사(전문가용)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 양성\*
  - \* 한시 시행 ('22. 3. 14. ~ 별도 안내시까지)
- ▶ 주요 임상증상 : 발열(37.5°C 이상), 기침, 호흡곤란, 오한, 근육통, 두통, 인후통, 후각·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

#### ○ 확진환자

-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
-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(전문가용)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

- ▶ 한시 시행 ('22. 3. 14. ~ 별도 안내시까지)
- ▶ 증상이 있고, 신속항원검사(전문가용) 양성 시 PCR 검사는 미시행 원칙, 다만 의사 판단하에 추가 PCR 진행 가능
- ※ 주의: 신속항원검사(전문가용),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 양성이라도 추가 PCR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확진 환자로 신고하지 않고 PCR 검사 양성 시 신고

※ 검역단계 사례분류는 사례정의를 참고하여 역학조사관 또는 공중보건과의 판단할 수 있음

## 2. 감염병의심자 정의(①~③은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5의2호, 2023.5.19.. 시행)

○ 감염병의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

- ① 감염병환자,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(이하“감염병환자등”)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(이하 “접촉자”)
- ② 「검역법」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
- ③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
- ④ 입국 전 신속항원검사(전문가용) 결과 양성인 사람

## 3. 장기체류외국인 · 단기체류외국인 분류 정의

○ (장기체류외국인) 「출입국관리법」 제10조의2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함

\* A-1~3, D-1~10, E-1~10, F-1~4, F-6, H-1~2, G-1

\*\* 유학, 연수, 투자, 주재, 결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

○ (단기체류외국인) 「출입국관리법」 제10조의2에 따른 단기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함

\* B-1, B-2, C-1, C-3, C-4

\*\* 관광,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

### III. 공항 검역대응 절차

#### 1. 공항 검역대응 주요사항 안내

[주요 추진경과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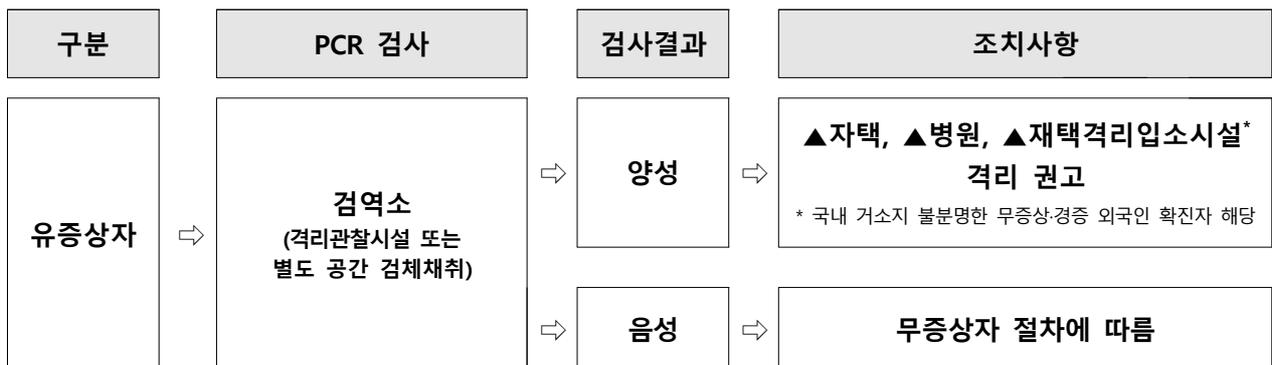
- ◆ 해외입국자 대상 의무 격리 전면 해제('22.6.8.~)
- ◆ 입국 전 음성확인서 요구 중단('22.9.3.~)
- ◆ 입국 후 음성확인서 요구 중단('22.10.1.~)
- ◆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 중단('23.6.1.~)
- ◆ 코로나19 검역관리지역 변경: 전세계 → 미지정('23.7.15.~)

[지속 추진사항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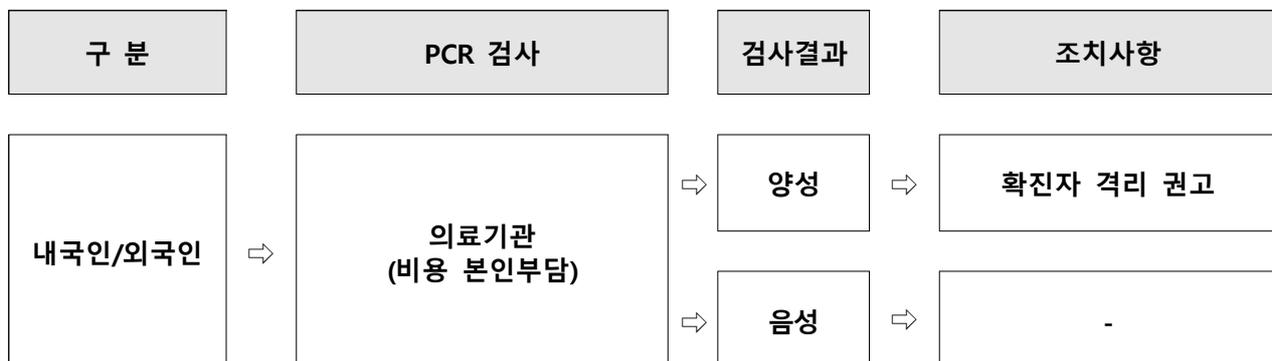
- ◆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(Q-CODE) 운영
- ◆ 추후 신종변이 발생 또는 국내·외 상황 변화 시 조정 가능

#### 2. 공항 검역대응 흐름도

##### □ 유증상자



##### □ 무증상자



### 3. 입국검역

◆ 검역관리지역별 대한민국 입국자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(Q-CODE)을 통해 검역정보 입력 후, 입국 시 검역관에게 시스템에서 발급 받은 QR코드\*를 제시하여 건강상태 확인  
\* 발급받은 QR코드는 인쇄하거나 휴대전화 사진 등으로 제시

- (대상) 검역관리지역별 해외입국자(내국인 포함)
  - \* 검역관리지역 외 입국자는 개별 발열감시 실시
- (구성) 입국자 발열 여부(발열감시카메라, 고막체온계 등),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한 건강상태 정보 확인
- 검역정보 확인
  - (Q-CODE 이용자) 발급받은 QR코드를 스캔하고, 검역관은 Q-CODE를 통해 입국자의 건강상태 및 정보 확인
  - (Q-CODE 미이용자) 입국장에서 검역관의 안내에 따라 Q-CODE에 건강상태 정보 입력, 검역관은 Q-CODE를 통해 입국자 정보 확인
  - \* Q-CODE 이용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서류검역 실시

### 4. 유증상자 검역조사·조치

- (유증상자 기준) 입국일 기준 21일 이내\* 발열(37.5℃ 이상) 또는 기침,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는 입국자(모든 해외입국자 대상)
  - \* 건강상태질문서에 따라 입국일 기준 21일 이내로 설정
- (대상)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유증상자로 분류
  1. 항공기 보건상태신고서를 통해 신고된 감염병 환자 등  
(기내 발열, 호흡기 증상 등 감염병 의심자 포함)
  2.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된 감염병환자등
  3. 입국장에서의 체온 측정\*, 건강상태질문서\*\* (또는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) 등을 통해 확인된 감염병환자등
  - \* 발열 확인 시 추가로 고막체온 측정하고, 해열제 복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감안하여 검역관이 유증상자로 분류 가능
  - \*\* 건강상태질문서 등 입국자 건강상태 확인하면서 검역정보 확인 병행

※ 건강상태질문서 작성을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「검역법」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

## ○ 기내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

- 기내 유증상자\* 발견 시 「검역법」 상 항공기 보건상태신고서 상에 적시\*\*하여 신고

\* 기내 유증상자 및 승무원은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

\*\* 항공기 보건상태 신고 별지 명세표에 유증상자 작성

- 유증상자를 우선 하기하여 검역대에 인계, 검역소는 보건교육, 임시격리, 검체채취 등 조치 실시

## ○ 유증상자 검역조사

- 유증상자\* 분류 후 검역소 격리관찰시설(실) 등 독립된 공간에서 검체 채취\*\* 실시

\* 유증상자는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

\*\* 관할 질병대응센터로 PCR검사 의뢰

※ 국내 거소지 또는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격리관찰시설(실)에서 대기 가능

- 상태가 중증 이상인 경우, 검역소 격리시설에서 대기 후 국립중앙의료원 등 의료기관으로 이송 조치

\* 검역소 소재지 119 신고 고려

- 상태가 경증인 경우, 검역소 검체채취 후 자차 등 이용하여 자가 또는 숙소 대기 가능함

\* 이동 시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, 검사 결과 안내를 위한 연락처 확인 철저

**[(참고) 중증도 분류기준]**

\* 코로나19 지자체 대응지침 참고

단계	정의	현행 중증도 분류
1	일상생활 지장 없음(no limit of activity)	경증이하
2	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나 산소치료 불필요 (limit of activity but No O2)	
3	비관산소치료(O2 with nasal prong)	중등중
4	산소마스크(O2 with facial mask)	
5	비침습인공호흡기/고유량산소요법 (non-invasive ventilation/high flow O2)	위중증
6	침습인공호흡기(invasive ventilation)	
7	다기관손상/에크모/CRRT (multi-organ failure/ECMO/CRRT)	
8	사망(death)	사망

○ 유증상자 검역조사 시 역할

- (검역관) 유증상자 통합조사·분류표[서식 13] 작성 후 **코로나19 의심 시 별도의 격리공간(실)으로 함께 이동 및 역학조사관 또는 공중보건의(타부처 파견 의사 포함)에게 인계**

\* 검역관은 KF94 동급 이상의 호흡기보호구와 장갑 착용(필요시 안면보호구, 가운, 레벨D 등 착용)

※ 역학조사관 또는 공중보건의(타부처 파견 의사 포함)가 없거나 대응이 어려운(확진자 다수 발생 등) 검역소의 경우, 검역관이 역학조사서 작성 후 질병대응센터에 역학조사 지원 요청

- (역학조사관 또는 공중보건의) 유증상자 통합조사·분류표 참고하여 **의심 환자 사례분류 시 PCR검사 실시**

\* 역학조사 시 KF94 동급 이상의 호흡기보호구와 장갑 착용(필요시 안면보호구, 가운, 레벨D 등 착용)

- (유증상자) 독립된 공간(검역조사실 등)에서 검체 채취 후 검사 결과 확인 전까지 격리관찰시설(실) 등에서 임시 격리 가능

○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

- (양성) ▲자택, ▲병원 또는 ▲재택격리 입소시설 등에서 격리 권고
  - \* 확진자 발생에 따른 세부 조치사항은 VI.확진환자 발생 시 조치 참고
- (음성) 무증상자 절차에 따름

## 5. 무증상자 조치

- (내국인·외국인) 입국 후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 등에서 검사(비용 자부담)

※ SOFA협정 적용자로 주한미군(A3)과 그 관련자는 미군부대에서 자체관리

- (양성) ▲자택, ▲병원 또는 ▲재택격리 입소시설 등에서 격리 권고
  - \* 확진자 발생에 따른 세부 조치사항은 VI.확진환자 발생 시 조치 참고
- (음성) 별도 조치 불요

## IV. 항만 검역대응 절차

### 1. 항만 검역 관련 주요 용어 정의

- 하선 유형에 따른 항만 입항 인원 구분
  - (입국자) 하선자 중 선원 교대 등의 사유로 「출입국관리법」 제12조에 따라 출입국의 입국심사를 받는 내·외국인
  - (재승선 내국인) 하선자 중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외출하였다가 선박으로 다시 돌아가는 내국인
  - (상륙허가자) 하선자 중 「출입국관리법」 제14조 및 제17조에 따라 출입국에 상륙 허가를 신청한 외국인
- 선박 탑승 유형에 따른 항만 입항 인원 구분
  - (선원)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「선원법」에 따라 공인된 명부에 등록된 사람 또는 선원수첩 등 선원신분증명서를 소지하고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온 인원(전선 또는 편승 인원을 포함)
  - (여객) 선원수첩 등 선원신분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으면서 근로 제공 외의 목적으로 「해운법」상 해상여객운송사업 해당 선박에 탑승하여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온 인원
  - (기타탑승자) 선원과 여객을 제외한 인원

※ 기존 검역 대응 지침 상 '승객'으로 표현된 인원을 '기타탑승자'로 적용함

## 2. 항만 검역대응 주요사항 안내

### [주요 추진경과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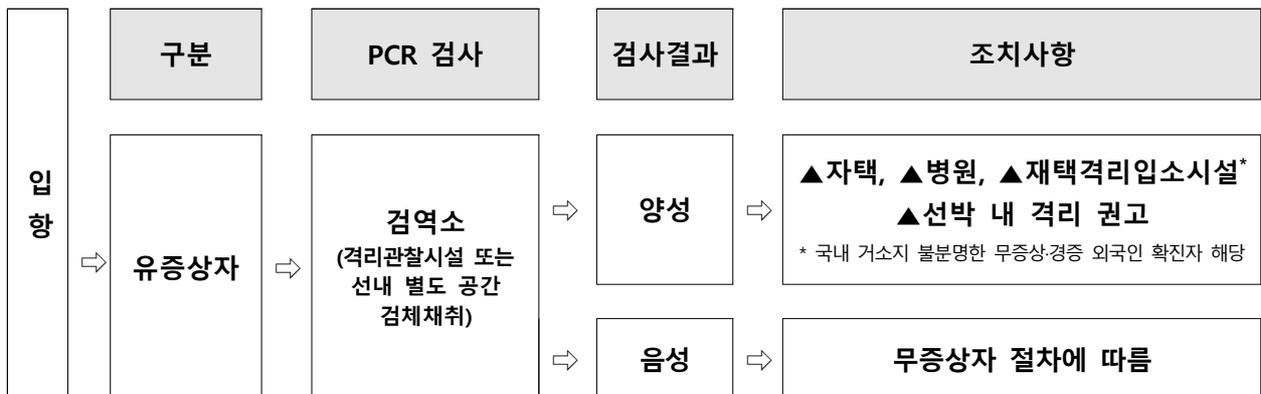
- ◆ 해외입국자 대상 의무 격리 전면 해제('22.6.8.~)
- ◆ 입국 전 음성확인서 요구 중단('22.9.3.~)
- ◆ 입국 후 음성확인서 요구 중단('22.10.1.~)
- ◆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 중단('23.6.1.~)
- ◆ 코로나19 검역관리지역 변경: 전세계 → 미지정('23.7.15.~)

### [지속 추진사항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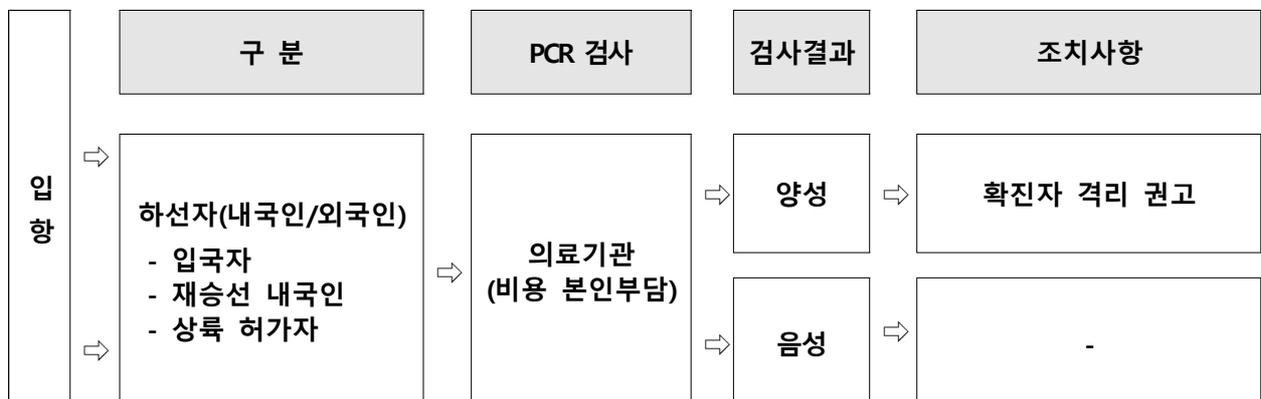
- ◆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(Q-CODE) 운영
- ◆ 추후 신종변이 발생 또는 국내·외 상황 변화 시 조정 가능

## 3. 항만 검역대응 흐름도

### □ 유증상자



### □ 무증상자



## 4. 검역조사

- (승선검역) 승선검역 대상\* 선박은 선박 입항시 검역관이 승선하여 '탑승자 전원'의 체온측정 및 건강상태질문서 확인 등 검역조사 실시

### ※ 승선검역 대상

- ① 다음의 내용으로 검역소장에게 통보하거나 보건상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
  - 선박 내 검역감염병 환자등이 발생했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
  - 선박 내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
  - 선박 내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거나 서식한 흔적을 발견한 경우
- ② **중점검역관리지역**에서 출항한 후 검역감염병 최대 잠복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
- ③ 입항 전 **검역관리지역**에서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 이내에 **선원 교대**가 있었던 선박의 경우
- ④ 「국제보건규칙」에 따라 작성된 **선박 위생관리 증명서나 선박 위생관리면제 증명서**를 소지하지 아니하거나 그 유효기간이 지난 후 입항한 선박
- ⑤ **이전 출항지 검역소장의 조치사항**을 이행하지 않은 선박의 경우
- ⑥ 그 밖에 검역소장이 승선 검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- (비승선 검역) 서류(전자)검역 대상 선박 경우 전산을 통해 검역조사 실시
  - 검역관은 서류심사로 신청한 선박 중 전산 심사결과 승선검역 대상 선박으로 판정 시 승선검역으로 전환하여 검역조사 실시
  - \* 서류검역의 경우, 선박 자체 발열감시 가능(검역통보일자 또는 선박입항일자에 발열체크를 수행하고, 발열체크 결과를 검역소에 제출)
  - \*\* 여객터미널이 있는 여객선, 크루즈선 검역은 선박 자체 발열감시 제외 (검역관이 검역대에서 개별 발열감시 직접 수행)

## 5. 유증상자 검역조사·조치

- (유증상자 기준) 발열(37.5℃ 이상) 또는 기침,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는 입국자(모든 하선자 대상)
- (대상)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유증상자로 분류
  1. 선박 보건상태신고서를 통해 신고된 감염병환자 등 (선내 발열, 호흡기 증상 등 감염병 의심자 포함)
  2.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된 감염병환자등
  3. 입국장에서의 체온 측정\*, 건강상태질문서\*\* 등을 통해 확인된 감염병환자등
    - \* 발열 확인 시 추가로 고막체온 측정하고, 해열제 복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감안하여 검역관이 유증상자로 분류 가능
    - \*\* 건강상태질문서 등 입국자 건강상태 확인하면서 검역정보 확인 병행
- (선내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) 선내 유증상자 발견 시 「검역법」 상 선박 보건상태신고서 상에 적시\*하여 신고
  - \* 선박 보건상태 신고서 후면에 기재
  - (여객선) 유증상자를 분리조치 후 검역소에 인계, 검역소는 보건교육, 임시격리 및 검체채취 등 조치
- (유증상자 검역조사) 유증상자\* 분류 후 검역소 격리관찰시설(실) 또는 선내 독립된 공간 등에서 검체채취\*\* 실시
  - \* 유증상자는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
  - \*\* 관할 질병대응센터로 PCR검사 의뢰

### ※ 크루즈선 내 선의가 시행한 전문가용 RAT 양성자 발생 시

- ① 선내에서 5일 격리 권고
- ② 하선을 희망할 경우 검역단계에서 검역소 검체채취 실시(PCR 검사)
- ③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 운송수단 감염 예방 조치 실시(선박소독 등)
  - \* 선박 자체 소독 수행(소독결과보고서 확인, 환경부 승인 소독약품 사용 확인 등)

- 상태가 **중증 이상**인 경우, 의료기관 진료 후 의사 판단에 따라 입원 가능
- 상태가 **경증**인 경우, 검역소 검체채취 후 자차 등 이용하여 자가 또는 숙소 대기 가능함

\* 이동 시,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, 검사 결과 안내를 위한 연락처 확인 철저

[(참고) 중증도 분류기준]

\* 코로나19 지자체 대응지침 참고

단계	정의	현행 중증도 분류
1	일상생활 지장 없음(no limit of activity)	경증이하
2	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나 산소치료 불필요 (limit of activity but No O2)	
3	비관산소치료(O2 with nasal prong)	중등중
4	산소마스크(O2 with facial mask)	
5	비침습인공호흡기/고유량산소요법 (non-invasive ventilation/high flow O2)	위중증
6	침습인공호흡기(invasive ventilation)	
7	다기관손상/에크모/CRRT (multi-organ failure/ECMO/CRRT)	
8	사망(death)	사망

○ (유증상자 검역조사 시 역할)

- (검역관) 유증상자 통합조사·분류표[서식 13] 작성 후 **코로나19 의심 시 별도의 격리공간(실)으로 함께 이동 및 역학조사관 또는 공중보건**의(타부처 파견 의사 포함)에게 인계

\* 검역관은 KF94 등급 이상의 호흡기보호구와 장갑 착용(필요시 안면보호구, 가운, 레벨D 등 착용)

※ 역학조사관 또는 공중보건(타부처 파견 의사 포함)이 없거나 대응이 어려운(확진자 다수 발생 등) 검역소의 경우, 검역관이 역학조사서 작성 후 질병대응센터에 역학조사 지원 요청

- (역학조사관 또는 공중보건) 유증상자 통합조사·분류표 참고하여 **의심 환자 사례분류 시 PCR검사 실시**

\* 역학조사 시 KF94 등급 이상의 호흡기보호구와 장갑 착용(필요시 안면보호구, 가운, 레벨D 등 착용)

- (유증상자) 독립된 공간(검역조사실 등)에서 검체 채취 후 검사 결과 확인 전까지 격리관찰시설(실), 선실 등에서 임시 격리 가능

-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

- (양성) ▲자택 ▲병원 ▲재택격리 입소시설 ▲선박 내 격리 권고
  - \* 확진자 발생에 따른 세부 조치사항은 VI.확진환자 발생 시 조치 참고
- (음성) 무증상자 절차에 따름

- (하역 작업 등) 유증상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 후 작업, 선원교대 등 가능

## 6. 무증상자 조치

- (내국인·외국인) 입국 후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 등에서 검사(비용 자부담)

- (양성) ▲자택 ▲병원 ▲재택격리 입소시설 ▲선박 내 격리 권고
  - \* 확진자 발생에 따른 세부 조치사항은 VI.확진환자 발생 시 조치 참고
- (음성) 별도 조치 불요

## V. 진단검사

- ※ 기존 검역소에서 수행하던 진단검사는 질병대응센터에서 수행
  - 검역소에서 검체채취 후 질병대응센터로 검사 의뢰
  - 단, 센터 내 신규 검사실 구축시까지 기존 검사실에서 검사업무 수행
    - \* 기타 행정사항은 검역소-센터 간 업무협의를 통해 수행

### 1. 검체채취 및 진단검사 실시

- (검체채취 장소) 검체 채취가 가능한 독립된 공간
  - \* 검역조사실, 격리관찰시설(실), 선내 등
- (검체종류) 상기도 검체(권장), 기침이나 가래가 있는 경우 하기도 검체\* 경증인 경우 상기도 검체만 채취
  - \* [부록 2] 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인을 위한 실험실 검사관리’ 참조
- (상기도 검체) 비인두도말물 또는 구인두도말물 채취
  - \* 비인두도말물을 우선적으로 채취하되, 비인두도말물 채취가 어려운 경우 구인두도말물 채취
- (하기도 검체) 가래가 있는 경우 채취(가래 유도 금지)
- (개인보호구) 검체 채취 시 긴팔가운을 포함한 4종(KF94 동급 이상의 호흡기 보호구, 장갑, 방수성 긴팔가운,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) 등의 개인 보호구 착용 가능[부록 2]
- (검사의뢰) 검역소는 관할 질병대응센터로 진단검사 의뢰(공문 등)
  - \* 검체 의뢰시 검사의뢰 관리대장[서식 8]을 작성하여 질병대응센터로 송부
  - \*\*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의 검역정보관리 내 검역일일현황 실적 보고

- (검사수행) 질병대응센터에서 진단검사 수행
  - \* 질병대응센터 신규 검사실 구축시까지 기존 검사실에서 검사업무 수행
- (결과회신) 질병대응센터는 검역소로 진단검사 결과 회신(공문 등)

## 2. 진단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

- (검사결과별 세부사항) 검역관은 대상자에게 검사결과 안내 등 보건교육 실시
  - (음성) 무증상자 절차에 따름
  - (양성) 최초 인지한 검역소는 재택격리 권고\* 안내
    - \* 재택격리는 국내에 거주지(또는 보건소에서 인정하는 장소)가 있는 경우에 한함
    - \*\* 세부적인 확진자 이송 및 격 절차는 VI. 확진환자 발생 시 조치에 따름
  - (미결정) 역학조사관, 공중보건의 또는 검사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격리 권고 여부 결정
- (검사결과 보고)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의 검역정보관리 내 검역 일일현황 실적 보고

※ 검사확인서[서식 11]는 내국인에 한해 요청시 발급 가능, 외국인은 발급 불가

## VI. 확진환자 발생 시 조치

### 1. 확진환자 발생 보고 및 통보

- (환자 발생 보고) 최초 인지한 검역소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의 검역정보관리 내 검역일일현황 보고

### 2. 확진 환자 이송 및 인계

#### 가. 확진자 이송

- 확진자 5일 격리권고 안내 및 귀가 또는 필요시 병원 방문 안내

#### ※ 확진자 이송수단 및 방역수칙 안내

- (이송수단) 검역소·보건소·119·민간운영 구급차 또는 개인차량(본인·동거가족 운전) 및 방역(일반) 택시 이용 가능하며,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이송
  - \* 개인차량 및 택시 이용시 유의사항 : 운전자 및 환자 외 탑승 자제
- (방역수칙) KF94 동급 이상이 마스크 및 장갑 착용, 환자 뒷좌석 대각선에 착석, 신체접촉 및 차내 음식섭취 금지, 하차 후 차내·외 표면소독, 운전시 창문 개방, 격리장소 외 경유 또는 하선금지
  - \* 개인차량, 방역택시 등 확보가 불가한 경우, 일반 택시 탑승을 제한적으로 허용

#### 나. 확진자 이송이 불가능한 경우(항만)

- (조치사항) 국내 병상 부족 등의 사유로 확진자 이송이 불가능한 경우 국외 회항을 원칙으로 하되, 회항이 불가하며 재택(또는 보건소 인정 장소) 이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선박 내 격리 권고
  - \* 확진자 격리 권고기간: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이 되는 날 자정(24시)까지
  - \*\* 선내 격리 중 증상 악화 등 필요시 병원진료 가능(선사 또는 해운대리점에서 사전에 의료기관으로 확진자임을 알리고 진료가능 여부 문의)

- (확진자 하선) 확진자는 5일 격리 이후 하선 권고
- (하역작업 등) 확진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 후 작업, 선원교대 등
- (추가검사) 확진자에 대한 추가 검사는 확진일로부터 45일까지 불요

※ **확진자 발생 선박 입항 시 조치사항(확진자가 선박 내 탑승)**

- 검역소장 판단 하에 진단검사, 격리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음

## VII. 기타 행정사항

- (행정조치) 해당 운송수단에 대하여 의사환자) 또는 유증상자 발생 통보 및 소독명령 등 조치, 소독이행여부 확인
- (이송수단 등 소독) 공·항만 내 이송환자 이동 동선에 따른 검역 구역 및 격리시설(실), 이송수단 등 소독조치\* 및 확인
  - \* 운송수단(항공기, 선박) 자체 소독 수행(소독결과보고서 확인, 환경부 승인 소독약품(<http://ecolife.me.go.kr>) 사용 확인 등)















□ 점검 항목

순서	점검 항목	검역조사 방법 분류
①	선내 검역감염병 환자등 또는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	승선검역
②	입항일 기준 14일 이내 선원교대 등으로 승선자가 있는 경우	승선검역
③	선박위생관리증명서(유효기간 만료 포함) 미소지 선박	승선검역
④	기타 검역소장이 승선검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선박 * 마스크 및 장갑 등 개인보호구 착용 가능여부 고려 ※ 도선사 등 ‘검역 전 승선허가자’는 예외	승선검역

- 검역조사 방법

· (승선검역) ①, ②, ③, ④

· (전자검역) ‘①’ ~ ‘④’ 중 전부 “미해당” 인 경우

□ 점검 시점 : 입항 전 또는 변경 신고가 접수된 경우

\* 향후 비용지급의 근거로 활용되어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확히 기재 필요

\*\*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작성(비고에 여권번호 기재)

연번	의뢰일	성 (Surname)	이름 (Given name)	국적 (Nationality)	생년월일	운송 수단명	검체 종류	의뢰 기관명	판정 결과	판정 결과 통보일	인수자	인계자	비고
(예)	2020-03-01	홍	길동	REPUBLIC OF KOREA	yymmdd		상기도 또는 하기도		양성 또는 음성	2020-03-02			
(설명)	yyyy-mm-dd 형식 유지	<b>성명 작성</b> - 내국인은 "한글명"으로 작성 - 외국인은 여권에 명시된 "영문명"으로 띄어쓰기 일치하게 작성		<b>여권에 명시된 공식적인 국적(영문)으로 기재</b> - 예시 REPUBLIC OF KOREA(o) 대한민국(x) 한국(x) South Korea(X)	<b>주민번호 앞자리 형식으로 6자리 기재 (yymmdd)</b>		<b>하나의 셀에는 하나의 데이터만 기재 (★ 검체 1건 기준으로 작성)</b> 1명 이상 하기도 2건 검사 했을 경우, <b>상·하기도 각 각 분리하여 작성</b> (셀 추가하여 2줄로 작성) - 구인두, 객담, 구, 비, 객 등으로 나열 표기 금지		<b>미결정 (indeterminate) : 데이터 삭제</b>	yyyy-mm-dd 형식 유지			



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검사확인서

신청인	성명		국적	
	생년월일		운송수단명	
	주소			

▣ 검체 채취

검체번호	검체 채취일	검체 채취자	검체 종류	채취 목적	비고

위 사람의 \_\_\_\_\_ 에 대한 \_\_\_\_\_ 의 실험실 검사를 실시한 결과는  
 (검체) (병명)  
 다음과 같습니다.

▣ 검사결과

검사항목	최종결과	결과 판정일	비고

\* 이 확인서는 본인 검사결과 확인 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년 월 일

국립○○검역소장 직인





유증상자 통합조사·분류표

조사자	소속:		조사일	년 월 일
	성명:	연락처 :		

1. 기초조사						
입국일시	편명/선명			작성번호		
이름	성	이름	국적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 등록번호, 여권번호 기입)		
생년월일	년	월	일	성별	<input type="checkbox"/> 남 <input type="checkbox"/> 여	
주소				직업(직장명)		
연락처	전화번호					
	이메일주소					

\* 기초조사의 인적 사항은 '건강상태질문서'의 인적 사항으로 같음할 수 있음

2. 여행력						
최근 21일 동안의 여행력 (경유국 포함)	국가	도시	체류 기간		경유	비고
			년 월 일 ~	년 월 일		
			년 월 일 ~	년 월 일		
			년 월 일 ~	년 월 일		

3. 임상 양상			
최초 증상 발생일	년 월 일		최초 발생 증상
약물복용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예(약물명: )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요		현지 의료기관 방문 여부 <input type="checkbox"/> 예 (방문 사유: )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요
증상 (현재 또는 최근 21일 동안 증상 여부 확인)	발열(37.5°C 이상)	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( °C)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요
	기침	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요
	구토	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요
	가래	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요
	숨가쁨	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요
	오한 및 근육통	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요
	복통 or 설사	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요
	설사인 경우	양상 <input type="checkbox"/> 설사 <input type="checkbox"/> 쌀뜨물 <input type="checkbox"/> 점액성 <input type="checkbox"/> 혈변 기간 일 회(가장심할때하루설사횟수 회)	
결막출혈 or 피부 출혈	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요	
도혈·혈변·흑색변	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요	
탈수	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요	
기타 ( 소화기 증상 ) ( 비뇨기 증상 등 ) ( )			

4. 위험요인		
동물 접촉력	발병 감시 기간 이내에 각종 동물(박쥐, 낙타, 침팬지 등 영장류, 쥐 등 설치류, 돼지·닭 등 가금류)과 접촉한 사실이 있습니까? 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 <input type="checkbox"/> 모름	
	접촉한 동물은 무엇입니까? 동물을 접촉한 장소가 어디입니까?	_____ _____
환자 접촉력	발병 감시 기간 이내에 다음 환자와 접촉한 사실이 있습니까?	
	감염병 확진자 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 <input type="checkbox"/> 모름	
	감염병 의심 또는 추정 환자 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 <input type="checkbox"/> 모름	
	기타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급성 호흡기 또는 바이러스출혈열 등 감염병 증상으로 치료받은 자 또는 사망한 자 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 <input type="checkbox"/> 모름	
접촉자 조사	동행 여행객 <input type="checkbox"/> _____ 명	
	동일 객실 이용자(선박 해당) <input type="checkbox"/> _____ 명	
	선실 방문자나 접촉자 명단(가능한 한 특정하여 작성)	<input type="checkbox"/> _____ <input type="checkbox"/> _____ <input type="checkbox"/> _____
	운송 수단 내 *방문 장소(가능한 시간과 장소 특정하여 작성) * 화장실 등	<input type="checkbox"/> _____ <input type="checkbox"/> _____ <input type="checkbox"/> _____
	기타 사항	<input type="checkbox"/> _____ <input type="checkbox"/> _____ <input type="checkbox"/> _____

5. 검역관 의결사항

6. 증상 확인 동의서		
<input type="checkbox"/> 확진 시까지 격리 및 대기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함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하지 않음
<input type="checkbox"/> 증상 확인을 위한 검체(체액 등) 채취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함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하지 않음
증상자 :		인

※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으며,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를 통해 열람, 정정,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※ 「검역법」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에 의거, 검역감염병의 감염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진찰 또는 검사할 수 있으며, 이를 따르지 아니할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.

※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(지자체용)」 참고

## 1. 검체 채취

### 가. 채취장소

- 선별진료소 또는 의료기관 내 다른 공간과 격리된 검체 채취 공간

▶ 단, 선내 격리 및 자가격리일 경우 격리장소에 따라 채취장소 변동 가능성 있음

### 나. 검체종류 및 포장

#### 1) 검체종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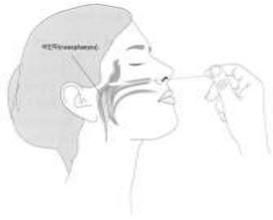
- ▶ 상기도 검체(권장), 기침이나 가래가 있는 경우 하기도 검체
- ▶ 경증인 자는 상기도 검체만 채취하여 검사 의뢰

번호	검체 종류		용기 및 용량	비고
1	상기도	▶ 비인두도말물	▶ 바이러스 수송배지 (VTM)에 채취	▶ 분리된 독립공간에서 채취 ▶ 비인두도말물 채취가 어려운 경우* 구인두도말물로 대체
2	하기도	▶ 가래	▶ (용기) : 멸균 50mℓ 튜브 ▶ (검체량) : 3mℓ 이상	▶ 가래가 있는 환자에서 채취 ▶ 가래 유도 금지(에어로졸 발생 가능성 있음) ▶ 정확한 진단을 위해 가래 채취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음압실에서 채취(음압 시설이 없는 경우 외부 환기가 잘 되는 독립된 공간에서 채취)
<p>* 비인두도말물 채취가 어려운 경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해부학적 또는 의학적인 이유로 비인두까지 면봉 삽입이 어려운 경우</li> <li>- 의사소통이 불가하여 비인두도말 채취를 위한 협조가 어려운 경우</li> <li>-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, 비인두도말물 채취가 불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</li> </ul> <p>※ 단순 통증·불편감은 해당하지 않음</p>	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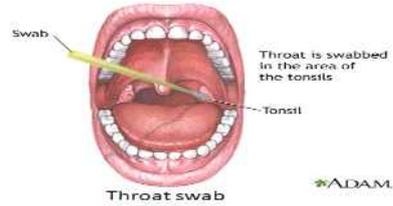
- (상기도 검체) 면봉을 이용하여 상기도 검체를 채취하고, 검체를 채취한 면봉을 바이러스용 수송배지에 담아 검체시험의뢰서[서식 9]와 함께 수송

- ▶ 비인두도말물(Nasopharyngeal swab) : 콧구멍을 지나 입천장과 평행한 각도로 면봉을 밀어넣고 하비갑개 중하부에서 분비물을 긁어서 채취, 하비갑개 중하부에서 몇 초간 분비물을 흡수할 수 있는 시간을 두도록 하여 채취
- ▶ 구인두도말물(Oropharyngeal swab) : 뺨 안쪽, 혀 뿌리 등이 아닌, 혀를 누르고 편도 주변 인두후벽에서 분비물을 긁어서 채취하되, 분비물을 충분히 흡수하여 채취

**[비인두도말물 채취 방법]**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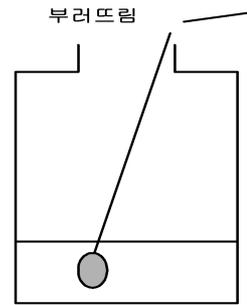
**[구인두도말물 채취 방법]**



출처: ADAM, 인플루엔자, 신종인플루엔자 범 부처 사업단(TEPIK)

**▶ 검체 용기 보관 방법**

- 수송배지가 담긴 병에 도달한 면봉을 담그고 병마개 부위에서 면봉을 부러뜨린 후 뚜껑을 단단히 잠그도록 함
  - 부러뜨릴 때 안쪽에 손이 닿아 오염되지 않게 주의
  - 검체가 담긴 병은 즉시 냉장고(4°C)에 보관
- 검체채취 후 반드시 채취용기에 환자의 인적사항(성명, 성별, 연령) 및 채취일을 기입
- 검사뢰서를 작성하여 검체와 함께 의뢰(4°C 유지)



- (하기도 검체) 환자 스스로 구강 내를 깨끗한 물로 세척한 후, 멸균용기(가래통 등)에 타액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깊이 기침하여 채취

**▶ 검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수송 시 누출되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(3중 포장) [가래 채취 방법]**

			
1. 구강 세척	2. 무균용기 사용	3. 기침하여 가래 채취	4. 완전 밀봉(4°C 유지)

**2) 검체포장**

- 채취된 검체가 포함된 1차 용기를 소독처리(70% ethanol)한 후 라벨 작성

**▶ 병원명, 검체종류, 채취일, 환자명, 성별, 나이 등의 정보 표시**

- 소독 처리된 1차 용기를 흡수제(종이타올 등)로 감싼 후 2차 용기에 넣음
- 2차 용기의 뚜껑을 단단히 잠근 후 3차 용기에 넣음
- 검체 시험의뢰서를 3차 용기 뚜껑 사이에 넣은 후 포장
- 3차 수송용기 겉면에 보내는 사람, 받는 사람, 응급상황 시 연락처를 기재
- 3차 수송용기를 아이스박스에 넣은 후 냉매제(아이스팩)를 용기 주변 4면에 삽입
- 포장된 아이스박스의 겉면에 감염성 물질 표식, UN 3373 표식, 방향 표식, 보내는 사람, 받는 사람, 응급상황 시 연락처 등을 기재

[3중 포장용기(예시)]

구 분	1차 용기	2차 용기	3차 용기
포장용기			

다. 주의 사항

- 검체 채취 시, KF94 또는 동급의 호흡기보호구, 일회용 장갑, 일회용 긴팔가운,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(필요시 불투과성 일회용 앞치마 추가 착용) 등의 개인보호구 착용 가능

2. 검사 의뢰

- (검역소) 검사의뢰 관리대장[서식 8] 작성하여 검체와 함께 의뢰
  - \* 질병관리청으로 의뢰하는 경우에는 검체 시험의뢰서[서식11] 작성, 보건환경연구원 등은 해당기관 서식 사용
- (검역소) 검체채취 후 권역센터(진단분석과 실험실) 소관 실험실로 검사 의뢰

3. 검체 운송

가. 검체운송 담당

- (질병대응센터에서 검사할 경우) 검역소 담당자나 검체운송기관 등을 통해 질병대응센터로 운송

나. 검체 운송 중 보관 조건

- 4℃를 유지하여 수송

▶ 72시간 내 운송 불가능한 경우 -80℃에 보관 후 드라이아이스를 이용해 수송

다. 검체 운송 시 유의사항

- 검체 수송 담당 지정
- 감염성물질안전수송지침(질병관리청) 준수
- (수송 차량 선정 및 비치) 포장된 검체를 자가운전 차량(또는 지정차량) 트렁크에 비치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고, 수송차량 내부에는 유사시를 대비하여 적절한 개인 보호구와 오염처리 장비(스필 키트), 소독제, 삼각대 등을 준비
- (이동 경로 선정 및 주의사항) 최단거리 및 안전한 경로를 지정하여 기관 책임자에게 보고 후 출발하고, 미리 정해진 이동 경로로만 이동(휴게소 이용 시 정지된 차량에 필수 인원 잔류)하고 이동 중 방어 운전과 도로교통 신호 및 규칙 준수

## 4. 검사 기관

- ◆ 기관에서 실시한 확진 검사에서 최초 양성을 확인한 경우, 질병관리청과 2중 확인 필요 (최초 양성 1회에 한하며, 이후에는 검사기관 자체 양성 판정 가능)

- (권역별 질병대응센터) 검역소에서 의뢰한 검체에 대한 유전자 검사

## 5. 검사 결과 보고

- (검사기관)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의 검역정보관리 내 검역일일현황 실적 보고
  - 검사결과는 검역관을 통해 대상자(조사대상 유증상자)에게 통보 및 설명
- 재검 필요시,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검사실 진단지침」과 「COVID-19 검사 Q&A」 최신판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정

- ▶ 해당 지침은 '대한진단검사의학회 홈페이지'에서 확인 가능

□ 적용범위

-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의사환자, 확진환자 및 접촉자에 대한 대응 과정 전반
  - 검역, 이송, 역학조사, 선별진료, 진료, 처치, 검체채취 및 검체이송, 검사, 수술, 기구관리, 환경관리, 사체관리 등

□ 주요내용

- 개인보호구의 종류, 선택, 착·탈의 및 주의사항, 의료폐기물로 배출



□ 사용 원칙

- 재사용이 불가피한 장비·제품을 제외하고 일회용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함
- 재사용이 불가피한 장비는 반드시 제조사 권고에 따라 소독 또는 멸균 처리
- 표준주의, 접촉주의, 비말주의(또는 공기매개주의)를 포함한 감염관리 방법 준수
- 감염 예방에 효과적이려면 개인보호구의 선택과 올바른 사용이 중요함
  - 감염원과 접촉 전에 착용(예: 환자 접촉 전, 격리병실 밖)
  - 착용 할 때 보호구별 착용 방법 준수(특히, 호흡기보호구의 밀착 상태)
  - 사용한 개인보호구에 오염된 병원체가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
    - 착용 상태에서 환자 이외의 주변을 접촉하여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
    - 벗을 때 본인의 신체 부위와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
  - 사용한 개인보호구는 감염원으로부터 안전한 곳에서 제거(예: 격리병실 밖의 갱의 실 등)

- 사용한 개인보호구는 무조건 오염으로 간주하여 벗자마자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 의료폐기물상자에 버려 폐기되도록 함
- 모든 개인보호구는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- 파손되거나 오염된 개인보호구는 사용·보관하지 말고 폐기
- 사용한 개인보호구 중 재사용이 불가피하고 소독 처리가 가능한 장비에 한하여 적절한 소독 처리 후 사용
- 눈에 보이지 않게 손과 신체 일부, 의복이 오염될 수 있으므로 개인보호구를 벗은 후에 항상 손위생(손씻기 또는 손소독)과 개인위생 철저

**□ 개인보호구의 종류와 용도, 상황별 권장범위**

- 개인보호구는 호흡기, 눈, 손, 발을 포함한 전신과 의복을 감염원으로부터 보호하도록 고려하여 선택
  -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, 일회용 장갑, 마스크(N95 또는 KF94 이상),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, 장화 또는 신발커버 등
- 개인보호구는 질환별 또는 감염경로, 감염 노출 상황·행위, 용도에 맞게 보호구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중요
- 개인보호구별 특성과 용도

보호구	위해요소	특성 및 용도(indications for use)	참고사진
일회용 장갑 (Glove)	접촉	-손 오염 방지 -노출정도를 고려하여 재질 선택 -파우더 알려지 있을 경우 파우더 없는 제품 또는 나이트릴 제품 사용	
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(Gown)	비말, 혈액, 체액이 전신이나 의복에 튼	바이러스 비말이 전신과 의복에 오염되어 간접 전파 되는 것을 방지	
전신보호복 (Coveralls)	비말, 혈액, 체액이 전신이나 의복에 튼	바이러스 비말이 전신과 의복에 오염되어 간접 전파 되는 것을 방지	
덧신 (Shoe covers)			
장화 (Boots)	혈액, 체액이 신발에 튼	-신발덮개 대신 착용 -바닥이 젖거나 오염이 심할 경우	

보호구	위해요소	특성 및 용도(indications for use)	참고사진
		-노출위험에 따라 선택	
모자 (Hair cap)	머리의 오염	비말이 머리에 오염되는 것을 방지	
고글 (Goggle)	혈액, 체액이 눈의 점막에 튀	-눈의 점막 오염 방지 -고글 재용 시 바이러스에 효과적인 소독제로 소독 후 사용, 보관	
안면보호구 (Face shield)	혈액, 체액이 눈의 점막에 튀	- 눈의 점막과 안면부 오염 방지 - 노출 위험 정도에 따라 고글 대신 착용 - 안면보호구 재사용 시 바이러스에 효과적인 소독제로 소독 처리 후 사용, 보관	
호흡기보호구 : KF94 동급 이상의 호흡기보호구	비말 또는 에어로졸 흡입	- 코, 입 점막을 통해 호흡 시 병원체 입자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. - 적용상황 예 : • 의심/확진환자 격리병실 입실 시 (의료 종사자, 방문객 포함한 모든 출입자) • 기침유도 시술 시 • 에어로졸 생성 처치 시 • 의심/확진환자 이송 시 등	
호흡기보호구 : PAPR	비말 또는 에어로졸 흡입	- 코와 입의 점막을 통한 감염원 흡입 방지 - 전지충전, 필터교환, 장비 소독 등 철 저한 점검, 관리가 필요함 - 파손, 오작동 여부를 사전 점검하여 사 전 수리, 교체 또는 폐기하여야 함 - 재사용이 불가피하면 소독 처리 후 사용, 보관	

○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상황별 개인보호구 예시

- 긴팔가운을 포함한 4종(KF94 동급의 호흡기 보호구, 장갑, 방수성 긴팔가운,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) 사용
- 일회용 가운, 고글(안면보호구)는 혈액, 체액, 분비물 및 배설물 접촉이 가능하거나.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점막·피부 보호 및 의복 오염을 막기 위해 착용 가능

(출처) CDC's Core Infection Prevention and Control Practices for Safe Healthcare Delivery in All Settings  
<https://www.cdc.gov/infectioncontrol/guidelines/core-practices/index.html>

※ 확진/의심환자 병실 출입, 진료, 간호 등 : 환자와의 접촉이 없거나 에어로졸 생성 처치가 없는 진료 및 간호 등은 [감염관리 전문가] 또는 [감염관리위원회] 등 기관 내 감염관리 부서에서 논의한 후 개인보호구 수준 결정



- 4종 또는 전신 보호복 충족 요건

보호대상	개인보호구	필수여부		개인보호구 충족요건 또는 적용상황
		4종	전신 보호복	
호흡기	일회용 KF94 동급의 호흡기보호구	○	○	-
	PAPR(KF94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대체)		필요시	에어로졸 발생되는 처치 시(KF94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대체)
눈	고글(또는 안면보호구)	○	○	김서림방지 및 긁힘 방지 코팅 처리
전신 · 의복	일회용 전신보호복	○	○	방수성 또는 2-3시간 이상 방수 유지 혈액 및 바이러스 불침투 되는 제품
	일회용 장갑	○	○	손목까지 덮을 수 있는 장갑, 두 겹 착용
	일회용 덧신(신발덮개)		○	발목 높이의 미끄럽지 않은 재질
	일회용 덧가운/앞치마		필요시	몸통에서 종아리까지 덮을 수 있는 보호구 예) 투석이나 지속적 신대체요법 시 착용

## □ 개인보호구 착용 및 탈의 안내

### ○ 개인보호구 4종 착의 예시 순서

				
<p>1. 개인보호구를 준비한다.</p>	<p>2. 손 위생을 시행한다.</p>	<p>3. 가운을 입는다.</p>		
				
<p>4. 마스크를 착용한다.</p>	<p>5. 손가락으로 마스크의 코 접촉 부위를 눌러 밀착시킨다.</p>	<p>6. 양손으로 마스크를 움켜쥐고, 흡입/배기하면서 새는 곳이 없는지 확인한다.</p>		
				
<p>7. 고글이나 안면보호구를 착용한다.</p>				<p>8. 장갑을 끼고 옷소매 위를 덮도록 주의하여 착용한다. (경우에 따라 장갑을 한 벌 더 착용할 수 있다.)</p>

○ 개인보호구 4종 탈의 순서

				
<p>1. 장갑을 벗는다. 한 손으로 반대편 장갑을 벗겨 손에 쥐고 장갑이 벗겨진 손으로 남은 장갑을 조심스럽게 벗겨 말아서 버린다.</p>		<p>2. 속장갑을 착용한 경우 속장갑을 소독하고, 속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손 위생을 시행한다.</p>		
				
<p>3. 가운의 환자 접촉 부위를 안으로 말아주면서 신체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탈의한다.</p>		<p>4. 손 위생을 시행한다.</p>		
				
<p>5. 고글 혹은 안면보호대 앞면을 만지지 않고 제거한다.</p>	<p>6. 손 위생을 시행한다.</p>	<p>7. 마스크를 제거한다.</p>		
				
<p>8. 손 위생을 시행한다.</p>	<p>9. 속장갑(착용한 경우)을 제거한다.</p>			

## □ 개인보호구 착의(착용) 및 제거 원칙

### ○ 착의(착용)

- 상황에 따른 개인보호구 권장 범위에 따라 미리 물품을 준비하여 올바른 착용 순서와 방법으로 착용

- ▶ 머리는 단정히 묶거나 고정하고 시계, 장신구 등을 제거하여 오염 방지
- ▶ 탈수 예방을 위해 보호구 착용 전 수분을 보충하고 미리 화장실에 다녀옴
- ▶ 착용 후 오염, 파손이 있을 경우 처치, 행위 사이에 개인보호구 교체
- ▶ 속장갑이 젖을 정도라면 근무자 교대

### ○ 탈의(제거)

- 감염원으로부터 안전한 곳(예: 격리병실 밖의 쟁의실 등)에서 개인보호구에 오염된 감염원이 신체 부위와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탈의
- 각 보호구는 벗자마자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올바른 순서와 방법으로 탈의하여 의료폐기물 상자에 바로 버림



